

구인자

구인자

구인자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것은?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제5조)

※ 워크넷에서 활용(공지/뉴스/자료)알림게시판>서식자료실
→ www.work.go.kr 검색

채용광고시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제8조)
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법제10조)

채용광고를 할 때 지켜야 할 것은?

거짓채용광고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법제4조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제4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 (법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 (법제4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면접비 등) 부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법제9조)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제9조)
(예시)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법제11조제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법제11조제4항)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반환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180일
기간내에서 사업주가 정하는 기간

반환 이행기간: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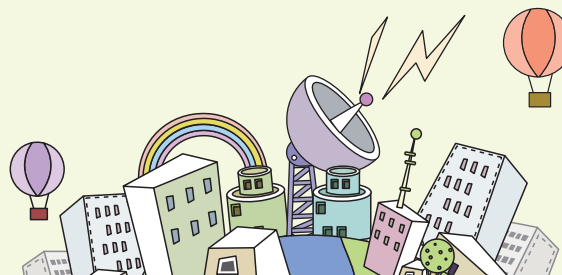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제11조제6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이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180일 기간 내에서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업주가 정하는 기간

※ 채용여부 확정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사지원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도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활용(공지/뉴스/자료)알림게시판>서식자료실)

※ 세부 기업내용은 워크넷 '서식자료실'에서 활용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1면>

<필수항목>

지원자성명 한글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 급 장애인 등록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 마련

구직자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법제4조제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다면? (법제4조제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응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법제11조제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법제11조제1항)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법제11조제4항)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법제11조제1항)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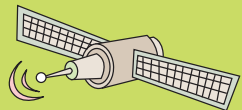
 구직자가 위 내용과 관련되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당 구인기업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일부 지역협력과)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뒷면 지방관서 연락처 참조)

채용절차법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담당자 연락처

지 역	지 청	부 서	연 락 처
서울	본 청	고용관리과	02-2250-5815
서울	서울강남	고용관리과	02-3465-8409
서울	서울동부	고용관리과	02-2142-8455
서울	서울서부	고용관리과	02-2077-6142
서울	서울남부	고용관리과	02-2639-2144
서울	서울북부	고용관리과	02-950-9731
서울	서울관악	고용관리과	02-3282-9125
중 부	본청(인천)	고용관리과	032-460-4511
중 부	인천북부	지역협력과	032-540-5625
중 부	부 천	지역협력과	032-320-8985
중 부	의정부	고용관리과	031-850-7714
중 부	고 양	고용관리과	031-931-2901
경 기	경기(수원)	고용관리과	031-259-0212
경 기	성 남	고용관리과	031-788-1584
경 기	안 양	지역협력과	031-463-7383
경 기	안 산	고용관리과	031-412-1914
경 기	평 택	지역협력과	031-646-1299
강 원	강원(춘천)	고용관리과	033-269-3565
강 원	강 릉	지역협력과	033-650-2533
강 원	원 주	지역협력과	033-769-0834
강 원	태 백	지역협력팀	033-550-8604
강 원	영 월	지역협력팀	033-371-6212
부 산	본 청	고용관리과	051-860-2152
부 산	부산동부	지역협력과	051-559-6660
부 산	부산북부	지역협력과	051-330-9805
부 산	창 원	고용관리과	055-239-6522
부 산	울 산	고용관리과	052-228-1984
부 산	양 산	지역협력과	055-370-0913
부 산	진 주	지역협력과	055-760-6544
부 산	통 영	지역협력과	055-650-1939
대 구	본 청	고용관리과	053-667-6319
대 구	대구서부	지역협력과	053-605-9009
대 구	포 향	고용관리과	054-271-6773
대 구	구 미	지역협력과	054-450-3573
대 구	영 주	지역협력팀	054-639-1131
대 구	안 동	지역협력팀	054-851-8079
광 주	본청(제주포함)	고용관리과	062-609-8892
광 주	전 주	고용관리과	063-240-3325
광 주	익 산	지역협력과	063-839-0002
광 주	군 산	지역협력과	063-450-0514
광 주	목 포	지역협력과	061-280-0209
광 주	여 수	지역협력과	061-650-0119
대 전	본 청	고용관리과	042-480-6226
대 전	청 주	고용관리과	043-299-1112
대 전	천 안	고용관리과	041-560-2871
대 전	충 주	지역협력과	043-840-4023
대 전	보 령	지역협력과	041-930-6210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적용사업장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2015. 1. 1시행

100명~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2016. 1. 1시행

30명~1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2017. 1. 1시행

구직자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것은?

 거짓채용광고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 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거짓채용 광고를 했다면? (법제4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했다면? (법제4조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